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서울대학교와 의**  **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** | | |
| 서울대학교와 (이하 “산업체”)는 산학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경영 인재 양성을 위해 Executive MBA(이하“EMBA”라 한다)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설치·운영하기로 계약한다. | | |
| **제1조** | **(목적)** 이 계약은 서울대학교와 “산업체” 간에 우수한 경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“EMBA”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
| **제2조** | **(설치학과, 및 학위전공)** ①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경영전문대학원에 계약학과로 “EMBA” 프로그램을 둔다.  ② “EMBA”에는 경영전문석사(MBA) 학위과정을 둔다. | |
| **제3조** | **(학사운영 및 학위수여)** “EMBA”의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는 「서울대학교의 학칙」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 | |
| **제4조** | **(계약학과 운영위원회)** ① “EMBA”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경영전문대학원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  ② 운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, 대한상공회의소, 경기도 및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 | |
| **제5조** | **(정원)** ① “EMBA”의 입학정원은 120명으로 한다.  ② 입학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| |
| **제6조** | **(입학 자격 등)** ① “EMBA”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「서울대학교 학칙」과 관련 규정에 따르되,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가 따로 정한다.  ② 학생선발은 “산업체” 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서울대학교가 선발한다. | |
| **제7조** | **(교육과정의 운영)** ① “EMBA”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총 49학점 이상으로 한다.  ② “EMBA”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(4학기) 이상으로 한다.  ③ “EMBA”교육과정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운영한다.  ④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| |
| **제8조** | **(운영경비 등 부담)** ① 매 학년도 “EMBA”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 ② 매 학기 “EMBA”의 등록금은 1인당 2,200만원으로 정하고, (”산업체”)는 등록금의 50%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, 부담비율은 입학 시 제출하는 “회사추천서”에 명시한다.  ③ 학교는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거나 학생의 재직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.  ④ 서울대학교는 등록금 청구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 및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하며, 기간 내에 각 등록금이 미납될 경우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 | |
| **제9조** | **(입학취소 및 제적처리)** ① “EMBA”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“산업체” 의 임직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, 재학 중 징계해고, 계약기간만료 및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 ② 다만 제1항의 학생이 도산, 구조조정, 직권 면직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•계속되는 휴업(휴직)•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| |
| **제10조** | **(퇴직, 학과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조치)**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.  ② “EMBA”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“EMBA”에서, “EMBA”의 설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“EMBA”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잔여교육을 맡으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. | |
| **제11조** | **(대학 시설사용)** 서울대학교는 “EMBA”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. | |
| **제12조** | **(상호협의)** ① 서울대학교와 (“산업체”)는 매 학기 소속직원의 재직여부 확인 등 “EMBA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.  ②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.  **부 칙** | |
| **제1조** | **(효력발생)** ① 이 계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상호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 계약기간은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연한을 준용하여 “EMBA” 입학일로부터 4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  ② 계약에 따라 “EMBA”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할 경우, 휴학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한다.  ③ 계약 유효기간 중 “산업체”의 추천을 받은 소속직원이 “EMBA”에 합격한 경우, 해당학생 입학일로부터 4년으로 계약기간을 재산정하여 계약을 연장한다. | |
| 이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고,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·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 **년 월 일** | | |
| **서울대학교 총장**  **유 홍 림** | | 기업명:  주소:  대표자 성명: (직인)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서울대학교와 의**  **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** | | |
| 서울대학교와 (이하 “산업체”)는 산학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경영 인재 양성을 위해 Executive MBA(이하“EMBA”라 한다)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설치·운영하기로 계약한다. | | |
| **제1조** | **(목적)** 이 계약은 서울대학교와 “산업체” 간에 우수한 경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“EMBA”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|
| **제2조** | **(설치학과, 및 학위전공)** ①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는 경영전문대학원에 계약학과로 “EMBA” 프로그램을 둔다.  ② “EMBA”에는 경영전문석사(MBA) 학위과정을 둔다. | |
| **제3조** | **(학사운영 및 학위수여)** “EMBA”의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는 「서울대학교의 학칙」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 | |
| **제4조** | **(계약학과 운영위원회)** ① “EMBA”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경영전문대학원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  ② 운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, 대한상공회의소, 경기도 및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 | |
| **제5조** | **(정원)** ① “EMBA”의 입학정원은 120명으로 한다.  ② 입학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| |
| **제6조** | **(입학 자격 등)** ① “EMBA”의 입학자격 및 전형절차는 「서울대학교 학칙」과 관련 규정에 따르되,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가 따로 정한다.  ② 학생선발은 “산업체” 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서울대학교가 선발한다. | |
| **제7조** | **(교육과정의 운영)** ① “EMBA”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총 49학점 이상으로 한다.  ② “EMBA”교육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(4학기) 이상으로 한다.  ③ “EMBA”교육과정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운영한다.  ④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| |
| **제8조** | **(운영경비 등 부담)** ① 매 학년도 “EMBA”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 ② 매 학기 “EMBA”의 등록금은 1인당 2,200만원으로 정하고, (”산업체”)는 등록금의 50%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, 부담비율은 입학 시 제출하는 “회사추천서”에 명시한다.  ③ 학교는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거나 학생의 재직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.  ④ 서울대학교는 등록금 청구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기관 및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하며, 기간 내에 각 등록금이 미납될 경우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 | |
| **제9조** | **(입학취소 및 제적처리)** ① “EMBA”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졸업할 때까지 “산업체” 의 임직원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, 재학 중 징계해고, 계약기간만료 및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 ② 다만 제1항의 학생이 도산, 구조조정, 직권 면직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•계속되는 휴업(휴직)•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| |
| **제10조** | **(퇴직, 학과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조치)**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.  ② “EMBA”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“EMBA”에서, “EMBA”의 설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“EMBA”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잔여교육을 맡으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. | |
| **제11조** | **(대학 시설사용)** 서울대학교는 “EMBA”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. | |
| **제12조** | **(상호협의)** ① 서울대학교와 (“산업체”)는 매 학기 소속직원의 재직여부 확인 등 “EMBA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.  ②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.  **부 칙** | |
| **제1조** | **(효력발생)** ① 이 계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상호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 계약기간은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연한을 준용하여 “EMBA” 입학일로부터 4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.  ② 계약에 따라 “EMBA”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할 경우, 휴학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한다.  ③ 계약 유효기간 중 “산업체”의 추천을 받은 소속직원이 “EMBA”에 합격한 경우, 해당학생 입학일로부터 4년으로 계약기간을 재산정하여 계약을 연장한다. | |
| 이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고,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·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  **년 월 일** | | |
| **서울대학교 총장**  **유 홍 림** | | 기업명:  주소:  대표자 성명: (직인) |